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662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자 (제출일)	심사경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193호)	정부	2025.8.14.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 회의(2025.09.24.)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143호)	서삼석의원	2025.11.12.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5.12.19.)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가.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16.)

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

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
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
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의 알, 치어, 치패 등의 생존·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중간육성)한 것을 수산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한편,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규정에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보상) 및 제68조(보상금의 공탁)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부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생산·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을 “생산·판매하는”으로 한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제4호에 따른 중간육성을 포함한다).
4. “중간육성”이란 수산동물종자 또는 수산식물종자를 생존·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을 말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친어등의 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등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제27조 전단 중 “제26조 및 제41조제1항·제4항을”을 “제26조, 제41조제1항·제4항, 제67조 및 제68조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허가””를 ““허가”(제6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의 필요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제4호에 따른 중간육성을 포함한다).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중간육성”이란 수산동물종자 또는 수산식물종자를 생존·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을 말한다.
4. 5. (생 략)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7. ----- ----- ----- -----생산·판매하는-----.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7. ~ 9. (생 략)

제19조(친어등의 검정) ① 해양수

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
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
등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
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
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

8. ~ 10. (현행 제7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제19조(친어등의 검정) ① 해양수

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
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등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
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
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

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
우

<신 설>

6. ~ 10. (생략)

② ~ ④ (생략)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제26조(수산물자생산업 허가) ①

1. ~ 4. (현행과 같음)

5. -----신
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
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의2.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
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6.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및 제41조제1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제26조, 제41조제1항·제4
항, 제67조 및 제68조를-----
--. -----“허가”
(제6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